

계약금액 조정 원가계산 실무

서성남 /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사



[3] 설계변경 조정실무

제1절 설계변경 조정제도

1. 개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는 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들어 고찰하여 본다. 설계변경 조정은 본래 시설공사 계약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물품구매 계약, 용역계약에도 준용하고 있다.

2. 조정요건

(1)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또는 규격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이 변동된 때

(2) 변경 증감된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기준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글 쓰는 순서	
[1] 개요	지난호
[2] 물가변동 조정 실무	
[3] 설계변경 조정 실무	금번호
[4]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조정	
[5] 사후정산실무(개산계약·조건부 계약)	

장의 승인(국가계약령 제70조③항)

제2절 개산계약 정산금액 산정

1. 가격산정 시점

정산가격의 산정시점은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 함(회계질의 회신, 회제 1210-1788 : '80. 9. 11.)

2. 정산가격 산정기준

(1) 국가계약령 제9조에 따라 다음 순위에 의한 가격산정을 원칙으로 함

- 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통제가격 범위내)
- ② 원가계산 가격
- ③ 실적공사비(중앙관서장이 인정한 것)
- ④ 감정가격
- ⑤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⑥ 전적가격

(2) 개산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원가계산에 의하여 정산할 사항임

(3) 개산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계약 법령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 준칙에 의함

3. 정산 원가계산 절차

- (1) 계약목적물에 소요된 물량조사 확인
- (2) 계약목적물에 소요된 단위당 단가 조사
- (3) 계약상대자의 결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등 활용

(3) 단위당 단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적용

(4) 기준요율은 계약체결 시점으로 적용

(5) 정산 원가계산 금액과 계약금액을 대비, 증감 지급

[6] 조건부 계약의 사후정산 실무

제1절 조건부 계약의 사후정산 제도

1. 개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 계약의 사후정산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실무요령을 기술하며 이 사후정산제도는 사후 원가계산 결과 계약금액의 감액요인만을 검토·조정

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2. 근거

(1)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국가계약령 제73조)

(2) 각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계약에 대하여 입찰전에 사후검토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자에게 열람하고 계약조건에 특약으로 명시하여 시행

(3) 계약이행 완료후 국가계약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소장절차에 따라 원가검토하여 정산(국가계약령 제73조③항)

(4) 구매기관 훈령(예 : 조달청훈령 제967호, '97. 6. 26. : 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

3. 대상

(1)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개산계약과 달리 일부 비목별 금액 결정이 불확실한 경우로서 주로 다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수입자재의 비중이 높은 품목

(3) 제작방법의 변경이 예상되는 품목

(4) 실거래 가격 자료의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 조사가 미흡한 품목

(5) 기타 품목의 성격상 가격등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4. 계약특수조건에 약정할 사항

(1)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및 범위

(2) 계약금액중 대상금액

(3)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방법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증서서류 내역

(5) 사후원가검토 완료시점(통상적으로 계약이행 완료후 6개월 이내)

(6) 사후원가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지급유보 범위(통상적으로 5~10%까지 유보 약정)

(7) 사후원가검토 완료후 증감조정 방법을 약정(계약의 성질상 감액요인만 검토 조정)

5. 사후원가계산 기준

-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

(4)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①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

- 품셈에 의한 당초 계약단가에 실제 단가 증감액과

- 동 증감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계약당사자간 협의 결정된 금액으로 산정

② 계약내용을 전부 변경한 경우

- 변경당시 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계약 당사자간 협의 결정된 금액으로 산정

(5) 기타 실비

① 위 이외의 경우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한 단가와

② 당초 단가와와의 차액 범위 내에서

③ 계약 당사자간 협의 결정된 금액으로 산정

(6)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당초 계약서상 계상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률에 의함

제2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정 방법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조정방법을 살펴본다.

1. 처리절차

(1) 자료확보

①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② 일위대가 산출표

③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내역서

(2) 조정액 산출

① 품목별, 비목별 변동물량에 대한 단가 조사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함)

② 변동 일위대가 및 변동 산출내역서 작성

③ 변동 원가계산서 산출 집계

④ 변동 원가 대비표 작성(당초 총차계약액·변동금액·증감액·변동후 총차계약액)

2. 조정액 처리

(1) 공사 현장감독(또는 감리) 책임자 확인. 계약기관에 제출

(2) 계약기관에서 검토 확정. 수정계약 체결

[5] 개산계약금액의 사후정산 실무

제1절 개산계약금액 정산제도

1. 개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개산계약 금액 정산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실무요령을 기술하며 개산계약금액 정산은 사후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지급하는 점이 감액요인만을 검토하는 조건부 계약의 사후검토 방법과 다르다.

2. 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 제23조(개산계약)

(2) 국가계약령 제70조(개산계약)

(3) 기타 관계법규 및 회계통칙

3. 개산계약 내용

(1) 계약대상

다음 경우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의 계약(국가계약법 제23조)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②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③ 정부투자기관(또는 출연기관)과 위탁, 또는 대행계약

(2) 계약절차

① 입찰전에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열람(국가계약령 제70조②항)

②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고 계약(회계질의 회신, 회제1210-1272 : '81. 6. 19.)

③ 개산계약후 감사원에 통지(국가계약령 제70조③항)

④ 계약이행완료후 국가계약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

- ② 일위대가 산출표
- ③ 설계변경 도면
- ④ 설계변경 물량 내역서
- (2) 조정액 산출
 - ① 변동자재에 대한 단가 조사(계약단가·신규 단가)
 - ② 변동 일위대가 및 변동 산출내역서 작성
 - ③ 변동 원가계산서 산출 집계
 - ④ 변동 원가 대비표 작성(당초 총차계약액, 변동분 금액, 증감액, 변동후 총차계약액)
- 2. 조정액 처리
 - (1) 공사현장감독(또는 감리) 책임자 확인, 계약기관에 제출
 - (2) 계약기관에서 검토, 확정, 수정계약 체결

[4] 기타 계약 내용변경 조정실무

제1절 기타 계약 내용변경 조정제도

1. 개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실무요령을 고찰하여 본다.

2. 조정기준

- (1)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이외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때
- (2)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
- (3) 실비산정은 회계예규 「실비산정 기준」에 의함
- (4) 공사계약, 제조구매 계약, 용역계약 등 모두 이 기준에 의함.

3. 법적 근거

- (1) 국가계약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3) 회계예규, 실비산정 기준
- (4) 기타 관계법규 및 회계통칙

4. 실비산정 기준

- (1) 실비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한 비용을 말하며
- (2) 실비산정은 국가계약규칙 제7조(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산출함.

5. 실비산정 방법

(1) 간접노무비

① 증거자료

- 급여 연말정산 서류
- 임금지급 대장
-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②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 원가계산준칙에 규정한 간접노무자의 노무량에 국가계약 규칙 제7조 제1호(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조사·공표가격)의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2) 직접계상 가능한 경비

① 대상비목

- 지급 임차료
- 보관비 등

② 증거자료

-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 요금고지서
- 영수증 등

③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변경된 기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출

(3) 간접계상의 경비

① 대상비목

- 복리후생비
- 소모품비
- 산재보험료 등

② 산정방법

- 당초 산정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이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로 곱한 금액과

3. 법적 근거

(1) 국가계약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 용역계약)

(3) 기타 관계법규 및 회계통칙

4. 조정방식

변동물량에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1) 단가의 정의

① 계약단가: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

② 예정가격 단가: 계약담당 공무원이 산정한 예정가격 내역서 상의 단가

③ 신규단가: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로서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2) 적용단가

①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

② 「계약단가」예정가격 단가인 경우는 예정가격 단가 적용

③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신규단가 적용

5. 조정범위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조정이 10% 이상인 경우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을 받아 조정(국가계약령 제 65조 ②항. '89. 12. 29. 개정)

6. 설계변경 조정에 관한 회계 질의 회신

설계변경 조정은 관계법령 및 회계지침(통칙·질의회신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므로 다음 질의회신 내용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초 계약상의 품목,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한다.(회제 125-1152: '83. 5. 6)

(2) 설계변경은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경을 의미하며 계약금

액이 3배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은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회제 125-1216: '84. 4. 24.)

(3) 1억원 이상 토목공사 입찰의 경우 총액 구매입찰 발주관서가 작성한 내역서 상의 비목, 물량 등이 착오로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것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설계변경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회제 2210-4311: '89. 12. 15. 및 회제 125-2043: '89. 7. 4.)

(4) 시공자가 단가·금액산출·기입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동 내역서 단가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회제 125-465: '87. 2. 23.).

(5) 도급계약서에 첨부한 내역서의 단가가 착오로 고가작성된 경우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단가조정은 가능하나 도급계약 금액은 발주관서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 없고 계약자는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회제 125-2002: '84. 9. 14.).

(6) 품셈의 변경은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의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음(회제 2210-2087: '85. 7. 30.).

(7)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회제 1210-1498: '80. 7. 31.).

(8)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가격 또는 물가지수로 역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함(회제 121-1010: '83. 4. 13.).

제2절 설계변경 조정방법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정의 절차 및 처리방법을 살펴본다.

1. 처리절차

(1) 자료확보

①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1) 사후원가의 개념

① 통상적 의미의 「사후원가」는 대상 목적물 완성전에 미리 예측하는 「예정원가」와 달리 대상 목적물 완성후에 관련하여 소요된 「실적원가」의 개념이다.

② 정부회계 국가계약법령에서의 「사후원가」도 실적원가의 개념이 되나 다음과 같이 일부는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규 및 회계예규에서 정한 비목과 그 적용범위로 제한

- 국가계약법규에서 정한 기준요율로 제한

③ 사후원가 계산금액이 계약금액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을 감액

6. 사후원가 계산방법

(1) 계약상대자로부터 자료 수집

① 원가산출 내역서

② 제작도면 및 제작물량 내역서

③ 자재단가 증거자료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수입면장 및 관계비목 지불 증거서류

④ 제작공정표 및 노무공수 투입근거 서류

⑤ 관계년도 결산서류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 명세서

- 임금지급대장

⑥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

(2) 원가요소별 산정방법

① 재료비

- 당해 목적물에 실제로 소요된 물량 및 단가 적용

- 수입재료는 수입면장에 의한 실수입 가격 적용

② 노무비

- 해당품 제작기간에 소요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노임단가 및 적용범위로 계산

- 상여금은 법령에 의한 비율(년 400%) 범위 내의 실지급 상여금을 적용

-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총급여액의 년 30일분을 계상

- 생산실적, 작업실적 등에 의한 노무공수 산정

③ 경비

- 직접경비 : 직접 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실적자료에 의하여 계산

- 간접경비 : 해당품 제작년도 결산자료를 활용, 분석하여 배분 계산

④ 일반관리비

- 계약당시 법령으로 규정한 비율범위 내에서 결산자료에 의한 비율로 적용

⑤ 이윤

- 계약당시 법령으로 규정한 비율을 적용

(3) 특례사항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불공정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 특수조건에 의한 지급유보금은 계약납품후 사후원가검토 완료전이라도 국가계약령 제37조 제2항(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범위)을 활용하여 보증서를 받고 유보금을 지급하는 사항

- 낙찰률이 85% 미만인 경우는 사후원가검토 면제하는 사항

(4) 사후원가검토에 관한 회계질의 회신

① 구성품중 수입품이 있는 경우 그 부품 수입 후 수입면장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초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수입면장에 의한 실수입 가격과 비교 정산함이 타당함(회계 1210-452 : '83. 2. 16.)

② 상여금은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년 400%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지급실적, 계약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용한다.(회계 1210-833 : '78. 5. 6.)

[※ 설비]